

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

나. 그 동안 버려졌던 빗물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7조제4항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“10년간으로 한다.”를 “15년간으로 한다.”로 ,
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“단축할 수 있다”를 “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”로 변경 (안 제7조)

※제1항제1호 :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감면

※제1항제2호 :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4항 본문 중 “10년간”을 “15년간”으로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축”을 “단축 및 연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도요금 감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감면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기제출한 시점부터 15년간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) ① ~ ③ (생략)	제7조(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<u>10년간</u> 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<u>단축</u> 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15년간</u> ----- --. ----- -----단축 및 연장----- -----.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,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관련 시설의 설치·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재정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수도요금감면기간을 10년에서15년으로 연장함으로 발생하는 세입감소(조례 제7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중수도설치업체 19개소에 대한 수도요금감면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시 발생하는 년도별 감면액을 추계한다.

나.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감면을 전제로 작성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도요금감면기간을 5년간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감소금액 연간 4,934백만원으로 5년간 24,670백만원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.

[표1] 연도별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감면액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감면금액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24,670
계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4,934	△ 24,67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4,934	4,934	4,934	4,934	4,934	24,670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4,934	4,934	4,934	4,934	4,934	24,670

5. 부대의견

기간 중 중수도신규설치 업체 발생 시 감면액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감면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로 고급 일자리창출효과, 기업이익 사회환원 등으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됨

6. 작성자 : 하수과 이혜숙. HP 054-480-4513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산 출 내 역 (감면기간 10년→15년으로 연장시)

- 중수도시설 설치 업체 수 : 19개소
- 2014년 1월~12월까지 감면액 4,934백만원
- 5년간 연장시 감면액
 $4,934\text{백만원} \times 5\text{년} = 24,670\text{백만원}$
 상세내역 : [표2] 참조

[표2]

※ 중수도설치업체 감면만료기간별 업체수 및 감면액

구분/ 만료년도		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당 년	업체수	19	2	4	2	1	1	2
	감면액 (백만)	4,934	800	979	463	78	13	191
감 면 누 계	업체수		2	6	8	9	10	10
	감면액 (백만)	24,670	800	1,779	2,242	2,320	2,333	1,724

구분/ 만료년도	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당 년	업체수	1	1	1	4					
	감면액 (백만)	141	208	1,682	379					
감 면 누 계	업체수	7	6	6	9	7	6	5	4	0
	감면액 (백만)	886	631	2,235	2,601	2,410	2,269	2,061	379	0

소관 실 · 과		하 수 과
입 안 자	과 장	방 성 봉
	담 당	김 호 창
	담 당 자	이 혜 숙 (480-4513)